

홍형철 변호사 「기본강의 형사소송법」
제8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(2025-12-23)

P. 202 내용수정

〈기준〉

2)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[변시 3회]

나) 탄핵증거 및 독립된 본증

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자
의 진술 등을 활용한 영상녹화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독립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
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).

〈수정〉

2)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[변시 3회]

나) 탄핵증거 및 독립된 본증

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자
의 진술 등을 활용한 영상녹화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독립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
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).

P. 203 내용수정 및 추가

〈기준〉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(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)
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…

제30조의2(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)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
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…
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(영상물의 촬영·보존 등)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
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
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을 녹화장치로 촬영·보존
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
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
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.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(영상물의 촬영·보존 등) ①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
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을 녹화장치로 촬영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
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,
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
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,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, 그 밖
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

록에 편철하여야 한다.

-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을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.
-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〈수정〉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(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)

-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…

제30조의2(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)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…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(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)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·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.

1. 증거보전기일,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. 다만,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2. 피해아동·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. 다만,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(信憑)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.

가. 사망

나. 외국 거주

다. 신체적, 정신적 질병·장애

라. 소재불명

마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, 범행의 내용, 피해자의 나이, 심신의 상태,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,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·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(영상물의 촬영·보존 등)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을 녹화장치로 촬영·보존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을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.

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(영상물의 촬영·보존 등) ①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을 녹화장치로 촬영·보존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을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.

P. 204 내용수정 및 추가

〈기존〉

다)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등 관련 내용

...

그러나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여 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(현재 2021.12.23. 2018헌바524,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위 규정은 앞서 살펴본 내용대로 2023. 4. 11. 개정되었다), 그 후 대법원은 ...

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...

〈수정〉

다)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등 관련 내용

...

그러나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여 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(현재 2021.12.23. 2018헌바524), 그 후 대법원은 ...

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...

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2023. 4. 11.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, 2025. 4. 22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각각 개정되었다.